

#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번	안 호	442
--------	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'95. 3.

발 의 자 : 운영위원장

## □ 제 안 이 유

-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직제 규칙중 개정규칙에 의거 공인조례중 사무국등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.

## □ 주 요 골 자

1. “사무국”을 “사무처”로 한다 (안 제5조)
2. “총무과장”을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한다 (안 제6조)
3. “사무국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한다 (안 제8조 1항 및 제2항)
4. { 별 표 } 4항의 “사무국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하며  
“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”을 “사무관리규격 별표1  
직인의 규격준용”으로 한다.

## □ 관 련 법 규

- 충청북도직제 규칙 제 1821 호 ('92. 1. 10)

##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“사무국”을 “사무처”로 한다.

제6조의 “총무과장”을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1항과 제2항중 “사무국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한다.

( 별 표 ) 4항의 “충청북도의회사무국장”을 “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”으로 하며  
“정부관인규격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”을 “사무관리규격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”  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